

#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Tax Payment Compliance of Local Tax

강희수\* · 정태성\*\*  
(Kang, Hee-Soo · Jung, Tae-Sung)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III.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 IV. 실증분석 및 결과
- V. 결론

## I. 서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러한 권리와 사무가 별 소용이 없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야 건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세정의와 세수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강력징수'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재를 모두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재산이 이미 매각된 후에 부동산 압류 등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또한 취득한 부동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권자는 체납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납세순응을 하지 아니하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시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지도 못하고, 체납액 징수도 되지 아니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장점을 부과고지 세목에 적용함으로써 납기 내에 납부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고납부 세목 중에서 취득세에 대한 납세방법을 조정함으로써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소득할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징수한다면 납세편의시책과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세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제고되어 건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2.1. 지방세의 구조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표 2-1> 와 같이 총 16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7. 1 부터 도세와 시군세가 폐지되고 모든 세목이 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사용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세는 일반재원에 사용되어지며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세율,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부과고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액 등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표 2-1〉 지방세의 구조

구분	용도별	세목별	신고방식
도세	보통세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세	신고납부
		레저세	신고납부
		면허세	신고납부, 부과고지
	목적세	공동시설세	부과고지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시군세	보통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부과고지
		주민세	신고납부, 부과고지
		재산세	부과고지
		자동차세	부과고지
		주행세	신고납부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도축세	신고납부
	목적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도시계획세	부과고지
		사업소세	신고납부

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목에 대해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고 이를 표로 작성

## 2.2.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지방세는 물론 국세도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추상적 납세의무와 구체적 납세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추상적 납세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조세채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발생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납세자중 일방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

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가 있다

### 2.2.1.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을 확정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지는 자기부과(Self-assessment)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과세관청에 부여된 책무의 하나를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납세의무가 지배에 대한 복종이 아닌 스스로의 책임을 의미한다

부과징수제도를 신고납부로 할 것인가 또는 부과고지로 할 것인가는 세목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이유로 확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과고지제도가 채용되고 있었으나 주로 징수편의의 요청에 따라 1947년 세제개정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이 직접세에 대해서 신고납부제도로 채용되고, 이러한 제도는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후 서서히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나 관세에 대해서도, 또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신고납부 제도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전부터 부과고지 제도를 취해왔는데 최초로 신고주의가 도입된 것은 1976년 12월 22일 부가가치세제와 특 법인세제의 신설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시에 주세법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다. 그 후 1978년 12월 5일 신설된 증권거래세가 신고납부제도를 취했으며, 1979년 12월 28일 법인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영국도 종래의 부과고지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1996과 1997년에 걸쳐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capital gain)에 대해 부과고지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중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통세등과 같은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행세·담배소비세·지역개발세·사업소세 등이 신고납부세목이다.

### 2.2.2. 부과고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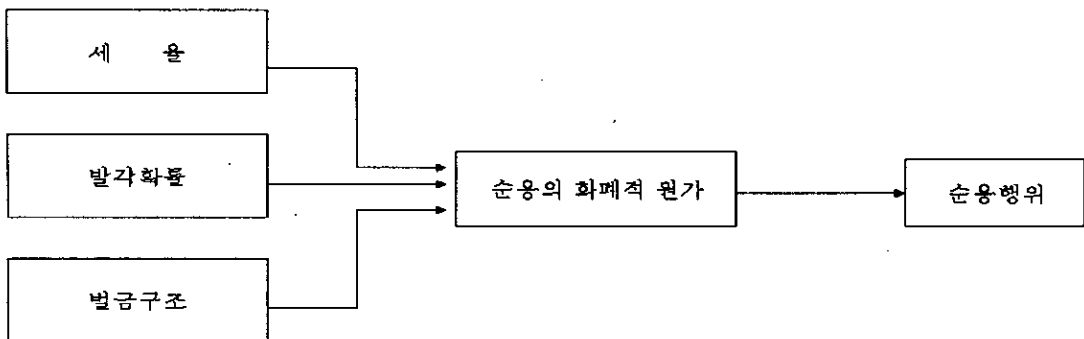
납세의무는 특정한 지위·물건 또는 사실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행

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에 대한 확정권의 소재 또는 확정수단에 따라 부과고지제도와 신고납부제도로 대별할 수가 있다. 부과고지제도란 지방자치단체 부과제도라 할 수 있는데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과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납기 한을 보통 15일 기간을 두어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납기 한을 경과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가산금을 본세에 추가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고, 독촉장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압류 등을 하여 청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2.3. 납세순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납세자 순응 모델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재무중심 모델과 비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확장 모델이다. 납세자 순응에 관한 많은 연구는 Becker(1967)의 범죄경제학 접근법에서 유도된 재무중심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개인들이 발각과 벌칙의 위험과 성공적인 탈세의 불확실한 효익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투기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이 접근법은 효용함수도 고려하면서 잠재적인 탈세의 원가와 효익이 전형적으로 화폐액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추구하는 바는 기대순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틀 내에서 세율, 발각확률, 벌금구조는 순응의 화폐적 원가를 결정하고 그것은 순응행위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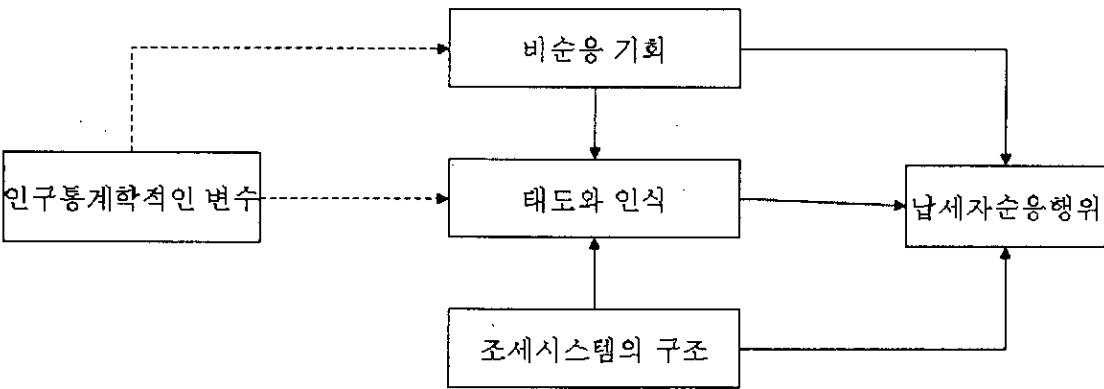


주) Becker(1967)의 재무중심모델

<그림 2-1> 납세자 순응에 관한 재무중심 모델

실증적인 연구는 납세자 순응의 결정요소들이 재무중심 모델보다 훨씬 더 많고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인 순응문헌검토에서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납세자 순응의 척도에 연계되는 14개의 변수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Jackson and Milliron, 1986) 이들 변수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나이, 성 등), 비순응 기회의 대응 변수(교육, 소득 수준, 소득원천, 직업), 태도 변수(윤리, 조세시스템에 대한 공평성 인식, 동료영향), 구조변수(조세시스템의 복잡성, 국세청 관계, 제재, 발각확률, 세율)이다. 따라서 <그림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Fischer(1991)은 순응행위의 확장 모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수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 순응에 대한 재무중심모델의 경제적인 요인들은 확장모델에 포함된다. 즉 조세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변수들이 세율, 발각확률, 벌금구조를 포함한 것이다. 확장 모델은 분명히 탈세할 상이한 기회의 변수를 통합하고, 태도 변수도 포함한다. 기회와 조세구조는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즉 모두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관계가 있다. 더욱이 동적 모델은 납세자 순응행위에서 역으로 태도와 인식, 비순응기회, 조세구조의 부가적인 방향을 포함할 것이고, 과거의 순응행위가 이들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 Fischer(1991)의 확장모델

<그림 2-2 > 납세자 순응에 관한 확장 모델

## 2.4. 선행연구

제도적인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세율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Spicer, 1986), 가산율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되며(Allingham과 Sandmo, 1972), 조세의 복잡성은 납세순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Vogel, 1974). 조세의 공정성은 납세자순응에 정(+ )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주, 2003)

개인적인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가 높으며(Young, 1994), 연령은 낮아질수록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cer, 1986; Song과 Yarbrough 1978)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조세회피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Cowell, 1985). 미국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의 노력 결과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Witt와 Woodbury, 1983)고 하고 있으며, 탈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세윤리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며(Lewis, 1979) 조세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측면에서는 납세순응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세금을 의미 없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Vogel, 1974) 정부가 징수능력을 신뢰받을 때 조세회피 성향은 줄어든다고 하고 있다(Song과 Yarbrough, 1978). 또한 동료집단 인식에 대한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 결과는 동료집단의 조세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Spicer와 Lundstedt, 1976)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들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세무환경과 달라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분야도 국세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에 대한 연구도 연구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결과가 모든 사항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부과자료로 확인함은 물론 차별화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대해서 세율, 발각확률, 조세의 공정성, 가산율 등이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는 실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방식(신고납

부, 부과고지)에 따라 납세순응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한 세목에 대해서 납세순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나 세목 간 비교하면서 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하더라도 그 세목마다 신고납부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이러한 세목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세목간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Ⅲ.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 3.1.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다. 지방세수확증과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신고납부 세목 중에서도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3.1.1. 지방세 납부방식(신고납부, 부과고지)과 납세순응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높임으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부과고지제도는 과세권자가 과세대상을 조사한 후에 과세표준, 세액, 납기등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므로 부과고지제도가 신고납부제도에 비해 납세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제도는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할 수 있어 조세행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제도 세목 납세자가 부과고지제도 세목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신고납부제도는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라는 벌칙조항이 있는 것과 또한 담세능력이 부과고지제도의 납세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징세비용을 최소화하고 징수금은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행위로 설정된 지방세 납부방식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서 부과지제도와 납세순응도를 비교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나 지방세수 확충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지방세의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 3.1.2.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과 납세순응

신고납부제도는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 모두가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세목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면 30일간의 기간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기간 내에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며,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요인이 취득세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다음해에 납부할 때에 소득세액에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발생연도와 주민세 납부시기와는 5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발생연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담세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사업자의 사정변경(즉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부도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고납부 세목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세목간 특성으로 인하여 납세순응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 2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세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거나 등기나 등록을 할 때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과세대상 취득과 세금

을 납부하는 기간이 30일이라는 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가 갖고 있다. 반면에 등록세는登記할 때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는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에 대해 취득세 납세자보다 선택권이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부가설 2-1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등록세는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물건 취득할 때 마다 납부하는 유통세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년도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할 때에 1회에 한해서 납부하지만 소득할 주민세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다음해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여유자금이 있어 취득하므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세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후에 신고 납부하므로 사업연도 당시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담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자가 그 이후에 부도, 사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므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발생 후 최소한 5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납세능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 2-2를 설정하였다.

가설 2-2 :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 3.2. 연구방법

### 3.2.1. 실증분석모형 및 검정방법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 신고납부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에 대한 모형을 설

정하고 검정방법을 제시한다.

### 1) 가설1에 대한 연구 모형1 설계

가설1은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가설이다. 모형1은 가설에 따라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중에서 어떤 납부방식이 납세순응도가 높은 가를 비교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과 나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나이 변수에 대해서는 민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성년시기에 대해서는 만 20세가 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세이하의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나이는 세 집단으로 분류하되 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20~30대를 한 집단으로 하고, 사회에 순응하고 직장에서 최고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중장년층인 40~50대를 한 집단으로 하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이후의 삶을 사는 노년층에 해당되는 60대이상을 한 집단으로 하였으며, 모형1에 대한 설계는 다음과 같다.

[모형 1]

$$Y = \alpha + \beta_1 \text{SINGO} + \beta_2 \text{SEX} + \beta_3 \text{AGE 21\_39} + \beta_4 \text{AGE 60} + e$$

여기에서 SINGO : 신고방식(신고납부 1, 부과고지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부과고지 기준)

SEX : 성별(남자 1, 여자 0으로 코딩, 기준변수는 여자)

AGE 21\_39 : 나이 (21세이상 39세 미만자는 1, 그 외 나이는 0으로 코딩)

AGE 60 : 나이(60세 이상은 1, 그 외 나이는 0으로 코딩, 기준 변수는 40-59세 기준)

### 2) 가설2에 대한 연구 모형2 설계

가설2은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은 신고납부 세목간에 납세순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중 취득세를 기준변수로 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과 나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사용하였다. 모형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 (B)값이 (+)이면,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이면 납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모형 2]

$$Y = \alpha + \beta_1 JUMIN + \beta_2 DEUNG + \beta_3 SEX + \beta_4 AGE_{21\_39} + \beta_5 AGE_{60} + e$$

여기에서 JUMIN : 세목 (주민세 1, 주민세 이외자료 0으로 코딩)  
 DEUNG : 세목 (등록세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SEX : 성별 (남자 1, 여자 0으로 코딩)  
 AGE 21\_39 : 나이(21세이상 39세 미만자는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AGE 60 : 나이( 60세 이상 1, 이외자료 0으로 코딩)

3.2.2. 표본선정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2008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였던 실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지방세 16개의 세목 중 선정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6개의 세목이다.

지방세 납세자중 법인과 중복되는 납세자는 제외하였으며, <표 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9,712명을 최종 변수로 확정하였다. 이중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는 77.6%에 해당되는 193,773명이고,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22.4%에 해당되는 55,939명이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 과 같다.

<표 3-1>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세목별	계	납부	미납	비고
합 계		249,712(100%)	193,773(77.6%)	55,939(22.4%)	
신고납부	소 계	76,152(100%)	65,641(86.2%)	10,511(13.8%)	
	취득세	39,065(100%)	34,736(88.9%)	4,329(11.1%)	
	등록세	20,292(100%)	19,931(98.2%)	361(1.8%)	
	주민세	16,795(100%)	10,974(65.3%)	5,821(34.7%)	
부과고지	소 계	173,560(100%)	128,132(73.8%)	45,428(26.2%)	
	재산세	118,430(100%)	98,632(83.3%)	19,798(16.7%)	
	자동차세	47,298(100%)	25,348(53.6%)	21,950(46.4%)	
	면허세	7,832(100%)	4,152(53.0%)	3,680(47.0%)	

## IV. 실증분석 및 결과

### 4.1. 「지방세 납부방식과 납세순응」 가설검정

지방세 납세제도 중 납세자가 스스로 세율,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과세관청이 부과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속하는 세목 중에서 과세대상이 일치하는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인 취득세와 부과고지제도에 속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변수로 하였다.

분석결과 <표 4-1>와 같이 우도비가 92322.8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자체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모델 카이제곱값은 13808.97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에 비교하여 납세순응도를 비교분석할 결과 신고납부에 대한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세제이므로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1> 납부방식에 따른 가설1 검정

변수		$\beta$	S.E.	Wald	유의확률	Exp(B)
납부방식	신고납부	1.132	0.017	4264.023	0.000	3.101
성별	남자	-0.099	0.011	79.000	0.000	0.906
나이	21-39세	-0.363	0.013	842.136	0.000	0.696
	60세이상	0.669	0.015	2033.400	0.000	1.952
상수		1.084	0.010	11568.695	0.000	2.956
모형 적합도		-2 Log Likelihood 92322.8(p=0.000) Model Chi-Square 13808.97(p=0.000)				

주) 납부방식 : 기준변수는 부과고지 세목(부과고지 0, 신고납부 1)  
 성별 : 기준 변수는 여자 기준(여자 0, 남자 1)  
 나이 : 기준 변수는 40-59세 기준

## 4.2. 「지방세 신고납부세목과 납세순응」 가설검정

### 4.2.1.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세순응도 차이

지방세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하는 가설은 가설1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해서 신고납부제도에 속하는 세목 모두가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기준 세목은 취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표 4-2>와 같이 우도비가 52328.4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자체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모델 카이제곱값은 8801.0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신고납부 세목별 납세순응도 차이에 따른 가설 2 검정

변 수		$\beta$	S.E.	Wald	유의확률	Exp(B)
세목 별	등록세	1.863	0.056	1117.108	0.000	6.445
	주민세	-1.512	0.024	4073.793	0.000	0.220
연령	남 자	-0.023	0.023	0.961	0.327	0.977
나이	21-39세	-0.223	0.026	71.984	0.000	0.800
	60세이상	0.239	0.031	57.826	0.000	1.270
상수		2.147	0.025	7204.207	0.000	8.558
모형 적합도		-2 Log Likelihood 52328.4(p=0.000) Model Chi-Square 8801.08(p=0.000)				

주) 세목별 : 기준변수는 취득세  
 성 별 : 기준 변수는 여자 기준  
 나 이 : 40-59세 기준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납세순응도를 비교분석할 결과 등록세에 대한 회귀계수가 (+)로 나타나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하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 4.2.2. 취득세와 주민세의 납세순응도 차이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4-2>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민세의 계수가 (-)이며, 통계적으로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서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취득세가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 1회에 한해서 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을 취득한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다는 의미로 담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세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그 다음해 5월에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연도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담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되는 시점에서서는 납세자가 부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가 제도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여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납세순응 제고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납세를 통하여 조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와 신고납부세목도 세목의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항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대해서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 세목 납세자가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담세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부과고지제도보다 가산세 부담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중에서도 세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납부 세목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록세는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으며, 취득세

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세 납세자가 취득세 납세자 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할 때까지 등록세를 납부해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 요인이 적고,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등록세보다 조세회피 요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세는 취득세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 과세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취득세 납세자가 주민세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이미 담세능력이 있으나 주민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담세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연도 종료 후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가 주민세의 납세순응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인지를 이용한 설문지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었으나 본 연구는 실제 부과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지방세 납부방식을 세목별로 신고납부제도로 정할 것인가 부과지제도로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고도의 조세윤리와 높은 지방세에 대한 지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납부방법이므로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을 전제로 한다.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신고납부제도가 그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과지제도에 속하는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거나 부과지제도에 일부 신고납부제도를 병행하여 납세순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같이 다른 부과지세목에 대해서도 선납제도 등을 도입하여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납세순응도를 세목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순으로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납세의무성립 여부,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 세목 특성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만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등록세 납세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세는 제도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규정을 취득세 세목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등기·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한다면 납세순응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는 등록세와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취득세는 세율조정을 하면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납세순응도는 높아지게 된다.

주민세인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 납부시기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때에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납세자는 납세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과세관청은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징수와 체납활동을 한 기관에서 하므로 징세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실제과세자료를 이용한 가치는 크다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한계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첫째 자료 수집의 한계로 전국에서 실제 과세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제주도에 한정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의 과세자료는 자료의 접근성이 타 지역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된 결과가 전국자료에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연구과제는 전국에서 실제 지방세를 과세하였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분석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세 과세자료는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였으므로 변수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자료와 행정기관에서 수집되어진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연계하여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다면 현재보다 나은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은경(2001), “납세자의 납세불순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훈(1997), “세법상 납세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완석(2006), 「조세법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황(1997), “납세자 순응연구의 문헌적 고찰”, 부경대 논문집, pp.231-249.
- 김태호(2009),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 문광주(2008), “부동산 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용대(2008),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조세결정자, 기업, 소비자)”,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용범(2006),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의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학식외(2004), 「SPSS 10.0 매뉴얼」, 법문사.
- 전동훈(2008), 「2008년 지방세 실무」, 행정안전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 정희상(2009),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근주(2003),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선(2009),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2008),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Allingham, M. G., and Sandomo, A.(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vmber, pp.323-338.
- Becker, G. S.(1967),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y, Vol. 78, pp.526-536.
- Cowell, F. A.(1985), "Tax Evasion with Labor Incom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6, pp.19-34.
- Jackson, B., And Milliron, V.(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Spring, pp.125-165.

- Lewis, A.(1982),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 No. 2, pp.245-257.
- Song Y. D. and Yabrough, T. E.(1978), "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 -October, pp.442-452.
- Spicer, M. W.(1986), "Civilization at a Discount : The Problem of Tax Ev National Tax Journal, March, pp.13-20.
- Spicer, M. W. and Lundstedt, S. B(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 31. No. 2, pp.295-305.
- Vogel, J.(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No.4, December. pp.499-513.
- Witte, A. D. and Woodbury, D.F.(1983), "The Effect of Tax Laws Adimistation on Tax Compliance", working paper 83-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orth Carolia, pp.41-87.
- Young, J. C.(1994), "Foctors Associated with Noncompliance : Evidence from the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 No; 2. pp.82-105.

